

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2001. 3. 28
總務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1. 3. 20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1. 3. 21
- 라. 上程日字 : 2001. 3. 28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崔鎮珏)

가. 改正理由

- 우리시 관내에 현존하는 마애불중 가장 뛰어난 국보 제84호 『서산마애삼존불』과 국가사적 제116호로 지정되고, 천주교 순교성지로 유명한 『해미읍성』 등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8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정으로서
-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4명을 승인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“825명”을 “829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10명”을 “814명”으로 조정함(안 제2조).

-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“853명”을 “857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38명”을 “842명”으로 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

-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백제불상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운산면 용현리에 위치한 백제의 미소인 국보 제84호 『서산마애삼존불상』과 국가사적 제116호로 지정된 『해미읍성』은 조선시대 축성된 읍성중 원형보존이 전국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잘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며, 또한 천주교 순교성지로서 해마다 수많은 문화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정원조정을 위한 것임.
- 그러나 '98년도 정부의 구조조정시 해미읍성사업소(정원 4명)가 폐지되고 현재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보 제84호인 『서산마애삼존불상』은 정규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일용직 1명이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현재 배치 인력으로는 문화재관리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산시는 2000. 11. 6자로 충청남도예 기구 및 정원 승인신청을 한바 있고 2001. 1. 11 충청남도의 문화유적 관리인력 승인사항이 통보된바 있음.

- 따라서 본 전문위원이 제출된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, 제13조, 제15조, 제20조, 제21조, 제24조 모두 검토해본 결과 서산시의 기구 및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·업무의 성질 및 양과 난이도·책임도등을 참작한 직급별 정원이 있다보며 특히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한 문화재관리 및 주변 포장마차등 잡상인 단속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라 보았으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97호
의결 년월일	2001. . . (제 회)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2001. 3 . 20 .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0.
제출자 : 서산시장

개정이유

- 우리시는 현존하는 마애불중 가장 뛰어난 국보 제84호 『서산마애삼존불』과 국가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고 천주교 순교성지로 유명한 『해미읍성』 등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8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정으로서,
-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4명을 승인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“825명”을 “829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10명”을 “814명”으로 조정함(안 제2조).
-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 2중 정원의 총수 “853명”을 “857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38명”을 “842명”으로 함.

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
○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, 제13조, 제15조, 제20조, 제21조, 제24조
- 충청남도 행정 12200-88(2001. 1. 11) : 문화유적 관리인력 승인사항 통보

《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현황 》

○ 승인정원 : 총 4명(문화유적지 관리인력보강 / 문화공보담당관실 배치)

- 지방행정주사보 1명
- 기능 9급(지방위생원) 1명
- 기능10급(지방위생원) 2명

《 정원조정현황 》

○ 총정원 현행 853명 ⇒ 조정 857명(증 4명)

구분	계	일반직								지도	기능	정무 별정
		소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
현행	853	656	1	5	41	154	238	172	45	33	138	26
조정	857	657	1	5	41	154	239	172	45	33	141	26
증감	+4	+1					+1				+3	

《 문화재관리 전담기구 정원증감현황 》

기구	구분	계	일반직				별정직 (7급상당)	기능직 (위생원)
			소계	행정6급	행정7급	행.건8급		
문화공보 담당관실 문화재 관리담당	현행	4	2	1	0	1	1	1
	조정	8	3	1	1	1	1	4
	증감	+4	+1		+1			+3

※ 정원의 인력 : 4명(청원경찰2, 단순노무2)

《 주요 문화유적지 현황 》

■ 마애삼존불(국보 제84호)

- 위 치 :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
- 건 축 : 백제말기(6세기 중엽)
- 면 적 : 1,290평
- 삼존불 : 석가여래상 2.8m
보살입상 1.8m
반가사유상 1.8m

○ 특 징

-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중 가장 오래되고,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
-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불상의 미소가 달라지는 백제인의 슬기가 담긴 작품으로서 “백제의 미소”라 칭하고 있음.

■ 해미읍성(국가지정 사적 제116호)

- 위 치 :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
- 건 축 : 1,418년(조선 태종 18년)
- 면 적 : 61,457평
- 성 광 : 길이 1,800m / 높이 5m
- 특 징

- 평지에 쌓은 석성으로 전국에서 원형보존상태가 제일양호하고,
- 대원군 천주교 박해시 천주교도를 압송하여 처형한 천주교 순교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음.

《 2000년 관광객 현황 》

관 광 지 별	관 광 객 수	비 고
계	1,860,782명	
마애삼존불	231,144명	
해미읍성	435,516명	
기타지역	1,194,122명	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825명”을 “829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810명”을 “814명”으로 한다.

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 1의 정원의 총수 및 1.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880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865명

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 2의 정원의 총수 및 1.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857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84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25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10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829명</u>----- -----</p> <p>1. ----- : <u>814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조례 제305호) 부칙</p> <p>제2조(정수에 관한 적용례)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,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.</p>	<p>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조례 제305호) 부칙</p> <p>제2조(정수에 관한 적용례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표 1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81명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66명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표 2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53명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38명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881명	1. 집행기관의 정원	866명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생 략)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853명	1. 집행기관의 정원	838명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생 략)	<p>[표 1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80명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65명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표 2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57명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42명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880명	1. 집행기관의 정원	865명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현행과 같음)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857명	1. 집행기관의 정원	842명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현행과 같음)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881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866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853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838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88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865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857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842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